

고속련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26.0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에 의거 해전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직무중심의 고속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 및 재학 연한

제2조(수업연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재학연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3장 입학

제4조(입학시기)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 포함)이 2년 이상인 자
4. 제3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 고시의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자 제출서류)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3. 산업체 경력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기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입학의 공정성 확보) 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한다.

제4장 등록, 휴·복학, 제적, 자퇴, 재입학 및 편입학

제10조(등록)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절차) ①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 및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등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조기복학 등록) 조기복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생의 등록)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입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금) ① 등록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기복학, 재입학 학생 중 학점을 일부 인정 받은 경우 또는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학점당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3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등록금 반환)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휴학) 휴학은 학칙시행세칙 제31조(휴학)를 따른다.

제15조(복학) 복학은 학칙시행세칙 제33조(복학)를 따른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제14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매 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17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의 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전과와 전공변경

제19조(전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6장 교육과정과 학점, 학업성적, 출결

제20조(학과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중요사항의 심의와 결정을 위하여 학과 전임교수와 전공분야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술석사과정 학과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는 산업체의 환경 및 수요분석과 산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학과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①항, ②항에서 심의·의결된 교육과정은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연계과정)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직무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점 인정) ① 국내외 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자 또는 중퇴자가 우리 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입학 전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개설한 단기직무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입학 전 공공연구기관에서 전공과 일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의 제적 전 취득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중복인정 할 수 없다.

단, ②항 및 ③항의 학점인정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선행학습학점인정 지침에 따른다.

제24조(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으로 취소된 최초 교과목의 성적은 평점평균에는 새로운 성적을 반영한다.

③ 취득한 이수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제25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성적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평 점 방 법		
배점	등급	평점
100 - 95	A+	4.5
94 - 90	A	4.0
89 - 85	B+	3.5
80 - 84	B	3.0
79 - 75	C+	2.5
74 - 70	C	2.0
69 - 65	D+	1.5
64 - 60	D	1.0
59 - 0	F	
불 계	P	

② 평균 성적 산출

1. 학업성적 평점 평균 및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평균평점} = \frac{(\text{각 과목 학점} \times \text{각 과목 평점})\text{의 합계}}{\text{총 수강 신청 학점}}$$

$$\text{백분율} = \frac{(\text{각 과목 학점} \times \text{각 과목 실점})\text{의 합계}}{\text{총 수강 신청 학점}}$$

단, 성적평가 등급이 P일 때는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교과목 중 점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과목은 합격여부만 구분하여 P(합격) F(불합격)으로 표시한다.

제26조(출결 및 출석인정) ①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 및 허가는 학칙시행세칙 제20조(출석인정 및 허가)에 따른다.

③ 미등록기간의 출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하지 않는다.

제7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27조(학생지도)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과제 및 논문지도, 개별상담을 밀착지도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지도 외에 진로 및 심리상담, 취·창업 상담 등을 하며 필요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및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거나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학생생활규정 제2정 징계에 의거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학생지도에도 행실이나 태도의 개선의 정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30조(수료요건 및 수료증서) ①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료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전문기술석사과정과 학위과제를 완료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1조(학위과제 심사위원회) ① 학위과제 심사는 학과 학위과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산업체 전문가를 1인 포함한다.

- ②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다.

제32조(학위과제) ① 전조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학위과제를 수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위 논문(대학의 학위논문 규정에 따름)
2. 학술지 논문
3. 연구보고서
4. 졸업작품
5. 기능장, 기술사, 지역명장 중 1개 취득
6. 특허출원
7. 기타 학위과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

② 학위과제 심사결과 미통과 자는 시 재학연한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학생에게 소정의 재심사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33조(학위기)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학부(과)장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34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필, 대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장 직제

제36조(교원)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공·연구·산업체 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전임교원을 학부(과)와 연계하여 5명 이상을 둔다.

제37조(학과장 등) 전문기술석사과정에는 학과장을 두며 대학의 계열 및 학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지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 운영팀을 둔다.

제10장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

제39조(위원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11장 기타

제4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

제41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2026.03.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료요건

학과명	수료요건
스마트푸드 첨단베이킹 융합기술과정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총 이수학점이 24학점 이상이며 평균 평점이 3.0(B ₀) 이상인 자

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과정 ○○○○○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과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후 전문기술석
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전문기술석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해전대학교 총장 ○○박사 ○○○ (직인)

해전대학교○○○○(석)-○○○○

제○○○○호

수료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과정 ○○○○○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해전대학교 총장 ○○박사 ○○○ (직인)